

2022년 7차  
코이카봉사단(155기)  
모집 안내문

2022. 8. 1.(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모집팀

## - 차 례 -

1. 모집 개요
2. 지원 자격
3.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안내
4. 선발 일정
5. 증빙서류 업로드
6.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 안내

[붙임2] 증빙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안내

# 2022년 7차 코이카봉사단(155기) 모집 안내

##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00명  
 ※코로나19 팬데믹 고려, 만 60세 미만의(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부스터샷 포함)에 한하여 모집
- 파견국 : 21개국
  - 아시아·태평양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피지, 필리핀
  - 아프리카 : 가나, 르완다, 모로코, 세네갈, 에티오피아, 카메룬, 탄자니아, 튀니지
  - 중남미 :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 동구·CIS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활동기간 : 1년(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가능)
- 파견유형 : 일반봉사단
- 파견시기 : 2022년 11월 하순부터 국별 순차적으로 파견 예정
- 모집직종 : 5개 분야 35개 직종

구분	직종
공공행정	경제, 관광, 국제개발
교육	과학교육, 미술교육, 미용교육, 사서, 수학교육, 유아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일반), 체육교육(태권도), 초등교육, 컴퓨터교육(디자인), 컴퓨터교육(일반), 특수교육, 한국어교육
기술환경에너지	건축, 기계, 섬유/의류, 용접, 자동차, 전기/전력, 전자, 환경
농림수산	농업, 수산/어업, 지역개발, 축산
보건의료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보건일반, 영양관리, 임상병리

- ※ 자세한 활동 내용은 ‘직종별 세부활동내역 및 수요조사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서 확인방법 : 홈페이지→모집선발→모집정보→기수별 모집정보)
- ※ 최종 국가배정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활동전문성과 협력국의 요청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되며, 소속 기관은 현지 교육 종료 후 최종 확정됩니다.
- ※ 단, 상기 모집수요는 협력국 요청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2 지원 자격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해당국가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는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 해외봉사단 파견 시 일반여권으로 파견 예정이며,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상세안내 예정
- 코로나19 팬데믹 고려, **만 60세 미만(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부스터샷 포함)**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 3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안내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월) ~ 2022. 8. 16.(화) **14:00까지** / 16일간

### ○ 접수방법

코이카봉사단 홈페이지(<http://kov.koica.go.kr>) 로그인



(메뉴 상단) 모집선발



지원서 작성 및 확인



**‘2022년 7차 코이카봉사단(155기)’** 선택



지원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

※ 별첨 ‘지원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 국가 및 기관은 희망하는 국가 순서로 **총 3지망까지 (3개 국가, 3개 기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국가로 2개 기관 선택 불가, 해당 직종의 모집 수요가 2개국 이하일 경우, 국가 수만큼 지망 가능)

## □ 선발 전형 안내

구 분	유의사항
1차 전형 (서류심사)	○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연령 등) 여부 점검 ※ 지원서 학력, 자격, 경력란에 기재 후, <b>증빙서류 업로드된 사항만 인정</b>
2차 전형 (면접심사, 적합도검사)	○ (적합도검사) 온라인 실시 ○ (기술면접) 지원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점검 ○ (일반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적응력 등 소양 평가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용조회)	○ (신체검사) 1차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검 진행 ○ (신용조회) 신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최종심사 및 국가배정	○ 3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 결과와 직종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가배정 및 최종 국내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4 선발일정(안)

일 정	세 부 내 용
2022. 8. 1.(월) ~ 2022. 8. 16.(화)	지원서 접수, 증빙서류 업로드 (오후 2시까지)
2022. 8. 8.(월)	모집설명회 (오후 3시)
2022. 8. 22.(월)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오후 2시)
2022. 8. 23.(화) ~ 2022. 8. 29.(월)	적합도검사
2022. 9. 2.(금) ~ 2022. 9. 3.(토)	면접전형
2022. 9. 8.(목)	신체검사 대상자 발표 (오후 2시)
2022. 9. 14.(수) ~ 2022. 9. 16.(금)	신용조회
2022. 9. 14.(수) ~ 2022. 9. 21.(수)	신체검사
2022. 9. 24.(토) ~ 2022. 9. 28.(수)	신체검사 재검 (※해당자에 한함)
2022. 10. 5.(수)	신용조회 및 신체검사 합격자 안내 (※이메일 및 문자안내)
2022. 10. 17.(월)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오후 2시)
2022. 10. 21.(금) ~ 2022. 10. 28.(금)	국내교육 (온라인)
2022. 11. 1.(화) ~ 2022. 11. 18.(금)	국내교육 (오프라인)
2022.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국	현장파견

※ 상기 일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5

## 증빙서류 업로드

## □ 증빙서류 업로드 안내

- 업로드 기간 : 2022. 8. 1.(월) ~ 2022. 8. 16.(화) 14:00 (지원서 접수와 동시)
- 업로드 방법 : 코이카봉사단 홈페이지 내 지원서 접수 시 전자문서 형태로 업로드(pdf, jpg, png)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	참 고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이후)	지원서 내 기재한 모든 학력 증명서 업로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b>※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b> ※ 단, 해외 학력증빙의 경우 증빙서류 추가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6개월 초과분 인정 ※ 증빙서류 내 기재된 학교명은 블라인드 위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에 학교명, 학과, 성명이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경력 증명서	지원직종 관련 경력증명서(무급 경력 포함) 업로드 <b>※ 기관 발급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명 및 직인/날인, 경력기간, 발급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b>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b>※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b>
면허증 및 자격증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 업로드
면허신고서 접수 확인증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직종(각 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가능)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함 <b>※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안내 파일 확인</b>
봉사활동 확인서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한함, 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b>(단, 해외봉사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b>
병적증명서	남성 지원자에 한함

※ 증빙서류가 지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증빙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참고

## 6

##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 □ 지원 전

구분	유의사항
일반 파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5기는 협력국(협력기관)요청에 의해 국내교육 수료 후 협력국 활동 현장에 파견되는 유형입니다.</li> <li>- 만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부스터샷 포함)에 한함</li> </ul>
단신부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여야 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li> </ul>
신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공무원 포함)는 소속기관과 협의(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li> <li>○ 교육부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의거,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li> <li>- 다만,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a href="http://kov.koica.go.kr">http://kov.koica.go.kr</a>)에 있는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li> <li>※ 모집 일정은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 “모집선발” ⇒ “모집일정” 클릭하여 확인 가능 (<a href="http://kov.koica.go.kr">http://kov.koica.go.kr</a>)</li> </ul>
중복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유형의 ‘코이카봉사단’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전형 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li> <li>※ 중복지원 불가한 봉사단 유형에는 KOICA 일반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드림봉사단, KOICA 자문단이 해당됩니다. (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등 위탁형 봉사단 미포함)</li> </ul>
선발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최종결과 발표 시

구 분	유의사항
국가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국가배정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활동 전문성과 협력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협력국 정부·활동기관 및 KOICA 해외 사무소 요청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협력국의 긴급 요청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공고되지 않았던 국가 및 기관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li> </ul>
국내교육 (온/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시점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b>모든 단원은 일반(복수)여권으로 출국합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교육 입교 시 일반여권 원본 지참 바람, 일반여권이 없거나 단수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7월 이전 만료자는 개인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국내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해외봉사단 자격을 부여받으며,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li> <li>○ 국가 배정 후 <b>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됨</b>을 유념 바랍니다.</li> <li>○ 교육 시작일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li> </ul>
백신접종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5기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u>국내교육 기간 내 코로나 3차 백신접종(부스터샷) 접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u>만 협력국 파견이 가능합니다.</li> <li>○ 국내교육 시작 후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서 제출 불가 및 거부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이후라도, 병력(病歷)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 증명서 위조 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li> <li>○ <b>파견 기간은 기본 1년</b>이며, 별도의 협력단 승인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b>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b>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해외봉사단파견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li> </ul> </li> </ul>

□ 문 의 처

- 대표메일 : kov1@koica.go.kr
- 전 화 : 1588-0434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휴무), 9시~18시(점심시간 : 12~13시)

## 2022년 7차 코이카해외봉사단(155기) 일반파견형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 안내

※ 하기 기준 내 해당자는 **지원서 항목 중 '취약계층'** 에 업로드 제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 출 서 류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중 1부

###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 출 서 류	1. 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 출 서 류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b>관 련 법</b>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li>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ol> </li> <li>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li> <li>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li> </ol> </li> <li>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li> </ol>
<b>제 출 서 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li> <li>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li> <li>3.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ol>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b>관 련 법</b>	<p>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li> </ol>
<b>제 출 서 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직등록확인서</li> <li>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li> </ol>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등록부</li> <li>•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li> </ul>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b>관 련 법</b>	<p>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li> <li>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li> <li>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li> </ol> <p>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b>제 출 서 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li> </ol>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b>관 련 법</b>	<p>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li> <li>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li> <li>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li> <li>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li> <li>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li> </ol> <p>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p> <p>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b>제 출 서 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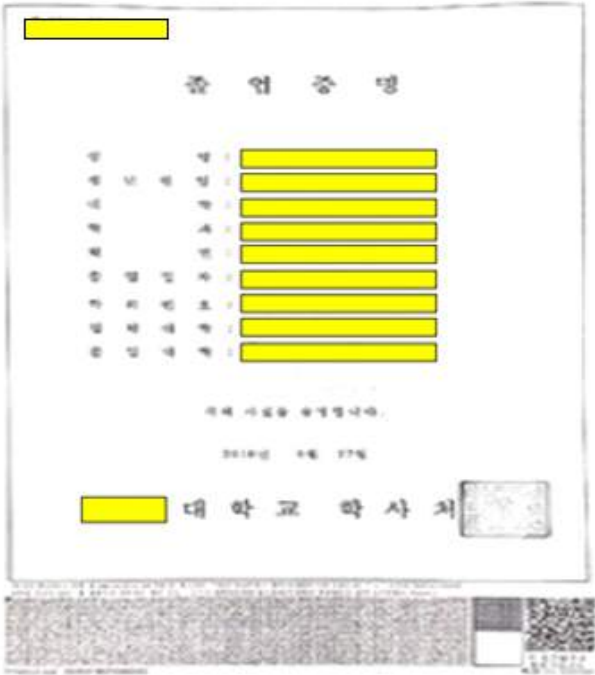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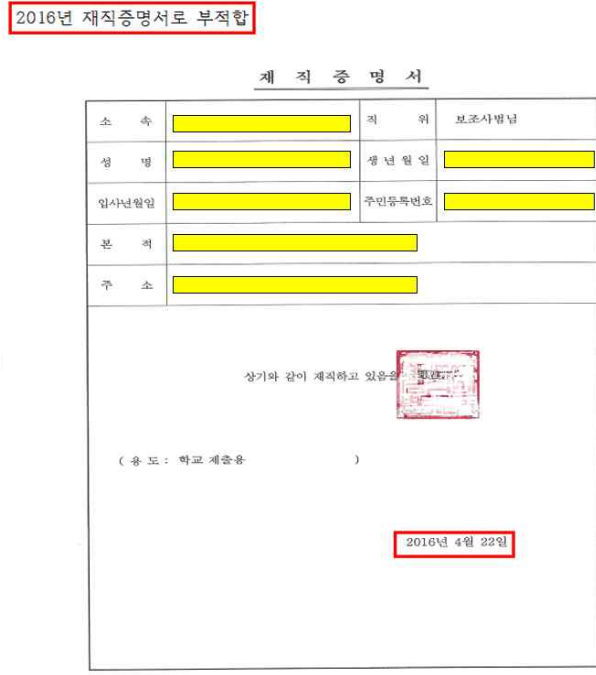
##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b>관 련 법</b>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b>제 출 서 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자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li> <li>2. 주민등록등본 1부</li> </ol>

## 증빙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안내

증명서 스캔본 혹은 원본 촬영본(해당 문서 사이즈에 맞추어 촬영) 업로드 시 문서 상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하기 잘못된 업로드 예시를 참고하여 증빙서류 부적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잘못된 업로드 양식 예시

○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불가능한 증명서 (부적합)	○ 학력증명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경력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발급일이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부적합)	○ 증명서 아닌 조회 정보 (부적합)										
	<p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2016년 재직증명서로 부적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2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이름</th> <th style="width: 15%;">영문명</th> <th style="width: 15%;">자격등급</th> <th style="width: 15%;">자격증번호</th> <th style="width: 15%;">발급일</th> </tr> </thead> <tbody> <tr> <td>홍길동</td> <td>GIL DONG HONG</td> <td>1급</td> <td>0000001</td> <td>2022. 01. 01</td> </tr> </tbody> </table>	이름	영문명	자격등급	자격증번호	발급일	홍길동	GIL DONG HONG	1급	0000001	2022. 01. 01
이름	영문명	자격등급	자격증번호	발급일								
홍길동	GIL DONG HONG	1급	0000001	2022. 01. 01								
	<p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2016년 4월 22일</p>											